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65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김영진 · 한민수 · 차지호
이연희 · 안태준 · 박민규
노종면 · 이해식 · 서삼석
윤후덕 · 박상혁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중대신고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7 신설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7(보호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의 처리 방향
2.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보호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호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보호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중 “제62조의6까지”를 “제62조의7까지”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2조의6까지”를 “제62조의7까지”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제69조”를 “제62조의7에 따른 보호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69조”로, “보상심위원회의의 업무”를 “보호심위원회 또는 보상심위원회의의 업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61조의2”를 “제61조의2, 제62조의7”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2조의7(보호심의위원회) ① 위</u> <u>원회는 신고자 보호에 관한 다</u> <u>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u> <u>위하여 보호심의위원회를 둘</u> <u>수 있다.</u> <u>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u> <u>호사건의 처리 방향</u> <u>2.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의 운</u> <u>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 또는</u> <u>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u> <u>“보호위원장”이라 한다)이 심</u> <u>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u> <u>항</u> <u>② 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u> <u>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u> <u>구성한다.</u> <u>③ 보호위원장은 위원회 위원</u> <u>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u> <u>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u> <u>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u> <u>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u> <u>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
위에 있는 공무원 중 보호위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
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 행정학 분야에 5년 이상 재
직한 사람,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4. (생략)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① (생략)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

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상심의위원회의의 업무</u> ----- ----- -----.
--	---